##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640

발의연월일: 2022. 12. 2.

발 의 자:김회재·기동민·김두관

김성환 · 김정호 · 김홍걸

이병훈 • 전해철 • 전혜숙

정태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집회나 모임은 유권자들이 선거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집단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므로, 이를 포괄적 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에까지도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일반 유권자가 받게 되는 집회의 자유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2018헌바357 등).

이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 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하였거나, 기관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집회나 모임에 한하여 집회·모임의 개최를 금지함으로써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6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3항 중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를 "야유회를 개최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8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제256조제3항제1호카목 중 "第103條(各種集會등의 制限)제3항 내지 제5항의"를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03條(各種集會 등의 제한) ①	第103條(各種集會 등의 제한)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	③
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u>야유회,</u> 그 밖의 집회나	야유회를 개최할 수 없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u>다</u>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⑥ 제8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
	는 기관·단체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
	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	
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1.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1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者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第103條(各種集會등의 制	카.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

限)제3항 내지 제5항의 規 定에 위반하여 各種集會등 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者 타. ~ 너. (생 략) 2. ~ 4. (생 략)

④·⑤ (생 략)

한)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타. ~ 너.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